

협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대진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은 (는) “학교” 소속 학생의 수탁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병원”은 “학교” 소속의 수탁교육자에게 수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의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인원 및 교육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간 : 2022년 8월 16일 ~ 2022년 12월 13일
2. 교육인원 : 42명
3. 교육비용 : 총 금 1,800,000원
(20,000원*39명*2주, 20,000원*3명*4주)

제3조(수탁교육전 교육) 수탁교육자는 수탁교육 개시 전에 “병원”의 방침 및 규정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부담) ① “학교”는 수탁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탁교육자의 피복, 근무화, 기타 비품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단, 수탁교육기간 중에 “학교”가 구입한 고정자산은 수탁교육기간 종료 후에 “학교”의 소유로 한다.

② 수탁교육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장비 및 비품 등의 손실 또는 망실로 인하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교육생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며, “학교”는 이를 보증한다.

제5조(복장 등) 수탁교육기간 중에 수탁교육자는 신분증 패용 및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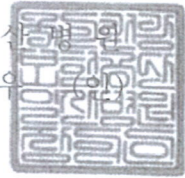
제6조(의료사고 등) “학교” 소속의 수탁교육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 재산상의 손해 및 수탁교육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학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기타)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수탁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병원”과 “학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상기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8월 5일

“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표자 : 병원장 김성우 (인)



“학교”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대표자 : 총장 임영분 (인)

임영

